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 1차 시안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선진국 또는 경쟁국과 비교해 볼때 일본 0.4%('93), 영국 0.64%('93), 대만 0.45%('92)로서 약 2배 이상 되며 사망만인율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10여배에까지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한 귀중한 인명손상은 물론이고 경제적손실 또한 매우 커서 지난 한해동안 근로일수가 노사분규에 의한 손실일수의 140여배에 달하는 등,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인 손실규모는 GNP의 1.6%인 5조6천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21세기 국가전략인 [세계화]를 지향하고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인간생명존중에 바탕을 둔 [안전]이 우리사회의 새로운 중심가치로 자리잡아 진정한 의미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난 2월 22일 전담 노동부장관과 강진구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정부부처, 노·사단체, 재해예방단체,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취약업종단체 대표 등 25명을 위원으로 하는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을 발족시켰다.

기획단은 산업안전선진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단 산하에 5개 실무작업반[총괄반(반장 최송춘 노동부 산업안전국장), 산업안전반(반장 장선식 공단 기술이사), 산업보건반(반장 윤명조 한국환경기술연구소장), 건설안전반(반장 박필수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상임고문), 교육홍보반(반장 강수현 공단 교육홍보이사)]을 두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이 안고 있는 제문제를 zero base에서 분석하도록 하여 산업안전선진화를 위해 3개년계획(안)을 수립·제시하였다.

[산업안전선진화]의 목표는 2000년초 우리의 산업안전수준을 OECD등 선진국 수준(산업재해율 0.5%, 사망만인율 1.00)으로 끌어올려,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보건관리수준의 선진화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BR, GR, OECD 가입 등 국제적 추세 대응완비와 산업의 발달에 앞서가는 재해예방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며, 산재예방특별사업 등 기존사업과의 연계유지로 사업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이루어 나가고, 우리가 안고 있는 산업안전관련 제문제를 분석해 취약요인을 찾아내고 집중적이고 입체적인 산재예방활동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은 지난 4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 1차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본지에서는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안)]으로 제시된

11개 개혁방안의 내용과 배경을 게재하여

정리하여 본다.

## ◆ [산업안전선진화]를 위한 11대 개혁방안

### [방안 1] 산업재해예방우수업체 혜택 확대

- 국내기업의 안전보건관리수준을 높여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재해예방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해율 0.5%, 사망만인율 1.0이하이고 최근 3년간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치가 허용기준의 1/3수준 이하로서 직업병자 및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무재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종합적인 경영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선진국수준인 기업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 초일류 기업」으로 선정
  - 국무총리명의로 「인증패」 수여
  - 기업명단과 안전보건관리실적 등을 대중홍보매체를 통해 발표
  - 초일류기업으로 선정된 후 2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에 대한 각종 지도·감독 등 모든 행정 간섭 배제
- 또한 「기업안전보건관리 평가제」를 도입하여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평가등급 A(우수), B(보통), C(불량)로 나누어서
  - A등급 기업은 사업장 지도·감독 일체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사법처리시 정상참작, 용자와 포상추천 및 국내외 산업시찰지원 등 각종 정부지원혜택 우선 부여
  - B등급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지도감독면제 및 기술자문차원의 지도실시
  - C등급 기업은 각종 재해예방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지도실시를 하는 등 차등관리한다.
- 산재보험법상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을 전산업으로 확대하고, 개별실적요율의 증감폭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등 산재예방우수기업에 대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 [방안 2] 정부의 재정·금융·정보지원 확대

-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개선 집중지원」
 

전 산업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의 획기적 개선지원을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9년까지 총 7,8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18개 위험제조업종에 안전관리지원을 확대하고,
  - 100인 미만 18개 유해업종 무료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실시, 작업환경개선기법 무료상담 및 기술지도, 유해작업환경 개선지원 보조 및 용자 등 보건관리지원을 확대한다.

- 유해·위험기계·기구검사, 자체·정기검사 무료실시, 안전설비개선비용 국고 보조대상의 확대, 작업환경개선시설 개선비용 국고보조 확대,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구입비용 국고보조 대상 확대 등의 제도를 마련한다.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용자 확대」
  - 「산업재해예방기금」과는 별도로 「산업재해예방시설용자기금」형태로 재원을 '99년까지 매년 10% 이상 증액하여 확보하고
  - 용자조건도 대출이자를 연리 6%에서 5%로,
  - 최고대출한도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
  - 용자대상도 확대하는 등 용자조건을 완화한다.
- 「재해예방시설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 기업의 재해예방투자시설구입 및 수입시 조세 및 관세감면에 있어서
  - 세제감면율을 조세인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10%에서 20%로
  - 관세인 경우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 재해예방시설구입시 부가세를 면세하는 등 실질적인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 [방안 3] 산업재해예방단체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 「산업부문별·업종별 산재예방전문단체 육성」
  - 조선업, 항만하역작업 등 산재취약업종을 우선 육성대상으로 하여 업종별 전문단체설립을 유도하고, 전문단체는 점진적으로 특화를 유도
  - 재해예방업무의 합리적 분담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단체별 전문성을 고려 업무위탁을 확대한다.
- 「산업안전보건전문인력 양성」
  - 「산업의학전문의」양성을 확대하고 「산업전문간호사」제도를 도입하여 보건관리 및 건강증진 업무의 고급화를 도모
  - 대학 등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기관에 「안전보건교육 장려금」 지원
  - 장학기금을 편성하는 「안전보건 장학제도」의 신설
  -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시험, 안전보건 법정 직무교육 등에 「안전보건 인정학점제」도입 활용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 [방안 4] 안전의식의 생활화

- 매년 7월1일을 「안전의 날」로 정해 산업안전보건대회, 산재예방유공자 포상, 안전보건학술세미나 등 범국민적인 안전보건행사를 전개하여 범국민의 안전의식 고취
- 안전관련 및 시민·여성단체로 구성되는 「안전문화추진사업단」 설치운영
- 초·중등학교 대상 안전관련 봉사 특별활동 전개
- 유치원 취학전 어린이에 대한 조기안전교육 생활화 운동전개

- 정규교육과정에 「안전 교과목」신설
- 「안전생활 지도교사」양성 등 가정·학교·사회를 연결하는 안전교육체계를 구축
- 중소기업의 유해위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업종별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하는 등 사내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한다.

### [방안 5] 노·사 및 협력업체 공조체제 구축

-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설치대상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하되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등 유해·위험 업종은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1000인 이상 대기업은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리, 별도 설치
- 조선업, 건설업 등 원·하도급 근로자가 혼재해 작업하는 사업장에는 노사 및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공동위험상황감시단」을 설치, 안전관리활동을 전개 하도록 한다.

### [방안 6] 생산설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 제조자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제품의 안전도, 품질관리능력, 성능 등을 종합심사하여 안전성을 인증하는 「안전인증제(가칭 S마크) 도입시행」
- 「안전성 결여 프레스 전면 교체」
- 안전장치 및 보호구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 [방안 7] 작업환경개선과 근로자 건강증진

- 「작업환경 자율개선지도」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안전취급과 사용체계 확립」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급
  -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의 「자기건강보호카드(CIS)」개발 보급
  - 화학물질 종합연구센터 설치
- 「직업병의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체제 정비」
  - 직업병진단 전문의료기관의 설립
  - 특수건강진단 대상사업장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 검진항목을 VDT증후군 등 신종직업병에 대한 항목까지 추가하는 등 직업병예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 「근로자 과로사 방지대책추진」
  - 작업강도 및 시간과 과로사와의 상관관계 연구
  - 사업장 종합건강증진 실천운동(THP)전개
  - 중작업 및 연장근로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방안 8] 건설재해 예방

- 전문가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과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검토의무화, 공정별 안전작업절차서(Safe Work Procedure) 작성 의무화
- 발주자, 설계자 등 공사관계자와 원·하도급업체 사이의 안전관리이행 감독 및 조정하는 「종합안전감독제(Safety Coordinator)도입」
- 「건설공사 가시설의 안전성 확보」

### [방안 9] 산업안전보건기준 이행확보

-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망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사업주에게 산재유발금을 부과시키고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한다.
- 현행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범칙금 부과제도로 변경, 대형사고 발생시 공사수주 및 구매계약의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등 적용확대

### [방안 10] 산업안전보건 규제·조직의 정비

- 민·관 합동의 산업안전보건관련 규제합리화 위원회를 설치, 각종 유사한 지도감독과 검사업무 등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
- 「산업안전보건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정책 및 집행기능의 통합조정 근거를 마련
- 「안전보건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종별, 공정별 근로자 작업과정에 적합하고 알기쉬운 기준을 제정
- 연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지도감독 인력을 확충
- 최신장비구입을 위해 3년 이내 100억원을 투입
- 「산업재해통계의 체계적 정비」

### [방안 11] 산업재해예방사업 재원확충

- 산재예방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로 산재예방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완수
- 과학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국가적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 정부운용 기금에 재해예방사업비를 전체예산의 3%이상 계상